



산학협력 협약서

동아대학교와 신용보증기금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지식과 정보의 상호 공유, 전문 인력의 교류 및 지역인재 양성을 통하여 양 기관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 원칙) 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양 기관의 규정을 존중하며,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3조(협력 분야)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

1. 전문인력의 상호 교류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지원
2. 산·학·연 공동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
3. 우수 인재의 잠재력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
4. 창업기업 지원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
5. 각종 문화행사 상호 초청 및 교류
6. 기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

제4조(협의조정) 본 협약서의 해석상 상호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협약 및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본 협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

산학협력 협약서

동아대학교와 신용보증기금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지식과 정보의 상호 공유, 전문 인력의 교류 및 지역인재 양성을 통하여 양 기관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 원칙) 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양 기관의 규정을 존중하며,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3조(협력 분야)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

1. 전문인력의 상호 교류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지원
2. 산·학·연 공동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
3. 우수 인재의 잡매칭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
4. 창업기업 지원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
5. 각종 문화행사 상호 초청 및 교류
6. 기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

제4조(협의조정) 본 협약서의 해석상 상호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협약 및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본 협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6조(법적 권리·의무) 본 협약서는 양 기관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. 또한 협약내용에서 정한 사항은 양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, 규정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7조(협약서의 효력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서명일로부터 1년간을 협약기간으로 하되, 각 기관이 협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 및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8조(협약의 해지) 참여 기관은 대내외적으로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당사자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5월 17일

동 아 대 학 교
총 장 한 석 정

한석정

신 용 보 증 기 금
이 사장 황 록

황록